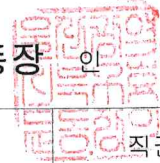


직권조치결과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5월 14일

효문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학	최 *학 1966-06-22	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9길 (연암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5-14